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25호 2019. 07. 31.(수)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603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604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사천시 조례 제160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사천시 조례 제1606호 사천시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사천시 조례 제1607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사천시 조례 제1608호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17
- 사천시 조례 제1609호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
- 사천시 조례 제1610호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79호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27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80호 저수지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고시 -----29
- 사천시 고시 제181호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30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사천시 조례 제160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각각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 를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 하나” 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 등을 위한 위촉일 또는 임명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2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통할하고” 를 “총괄하고” 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운영에 관하여” 를 “운영에”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4일이내에” 를 “14일 이내에”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를 각각 “해당”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한다.

제16조 중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을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으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사천시 조례 제160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장”을 “교육장, 소방서장,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서무팀장

제13조 중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사천시 조례 제160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20조제1항 중 “못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 를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제20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다만,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⑦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제22조제5호 중 “건강진단 또는” 을 “건강진단,” 으로, “건강검진” 을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제6항 중 “생후 1년 미만의 유아” 를 “5세 이하의 자녀” 로, “1일 1시간” 을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 으로 한다.

제23조제9항 본문 중 “불임치료” 를 “난임치료”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난자” 를 “여성공무원은 난자” 로 한다.

제23조제10항 중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을 “여성공무원” 으로 한다.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얻을 수 있다.” 를 “얻을 수 있으며,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일” 을 “20일”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일(1회 분할 가능)” 을 “20일” 로 한다.

제23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3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은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휴가신청은 유산일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이 조례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6항·제10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별표 3 중 출산의 일수란 중 “5일”을 “10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별표 6]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23조의2 관련)

###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소속기관의 장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 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2.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3.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4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 4. 병가

가.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 5.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25 호

사천시 조례 제160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4월~10월)” 을 “(3월~10월)”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1월~3월)” 을 “(11월~2월)”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시장” 을 “시장 또는 수탁자임차인(이하 “수탁자 등” 이라 한다)이” 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시장”을 각각 “시장 또는 수탁자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산정류장”을 “각산 및 초양정류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만 3세”를 “만 3세”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초과인원”을 “초과아동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무료탑승권) ① 시장 또는 수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탑승권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유료탑승객 수의 1% 이내로 한다.

1. 케이블카 홍보 마케팅에 필요한 경우

2. 관내 소외계층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수탁자 등은 무료탑승권 발급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수탁자 등은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이용료의 감면)”을 “(이용료의 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면”을 “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계시설 사용자 등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이 이를 적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감면” 을 “할인” 으로, “단체이용요금 할인 등 중복할인” 을 “중복할인” 으로 한다.

제14조 중 “정거장” 을 “정류장” 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을 “관리자는” 으로 한다.

제20조 중 “5년으로” 를 “5년 이내로” 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위탁 또는 전대(轉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위탁(임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임대)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전대(轉貸)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수탁자 및 임차인이 전대(轉貸)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위탁자 또는 임대인” 을 “수탁자 등” 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25호

[별표 2]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 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 캐빈	대인	15,000	<u>13,000</u>	9,000	<u>7,000</u>	1명 요금
	소인	12,000	<u>10,000</u>	6,000	<u>4,000</u>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0,000	<u>18,000</u>	12,000	<u>10,000</u>	1명 요금
	소인	17,000	<u>15,000</u>	9,000	<u>7,000</u>	1명 요금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만 3세(36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자 1명당 아동 1명 이용료 면제, 초과아동인원에 대하여는 소인요금 적용

# 사 천 시 공 보

제 625호

## [별표 3]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사천시민	대인	10,000원	-	1명 요금
	소인	7,000원	-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	1명 요금
경로우대자		<u>13,000원</u>	-	1명 요금

※ 1. 이용료 할인은 일반캐빈 왕복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4.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25호

사천시 조례 제160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25 호

사천시 조례 제160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1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 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가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교통사고가 현저히 우려되는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3조(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25호

사천시 조례 제160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1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과 무인비행장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계획)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해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장치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인비행장치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6. 무인비행장치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비행장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8. 무인비행장치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6조(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지원
2. 무인비행장치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무인비행장치 창업 지원, 산업단지의 지정, 특화지구의 지정 등
4. 무인비행장치 전문 인력 양성
5. 무인비행장치 시험비행장 조성
6. 무인비행장치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7. 무인비행장치 관련 행사개최 지원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8. 그 밖에 시장이 무인비행장치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무인비행장치 저변 확대)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무인비행장치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무인비행장치 저변 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제9조(위·수탁 관리)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도·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드론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법률 및 예산 지원)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종사자의 무인비행장치 개발·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관련 연구, 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위탁,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

# 사 천 시 공 보

제625호

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25호

사천시 조례 제161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 제5항” 을 “제9조제7항”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9조제5항” 을 “제9조제7항”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3조제1항제3호 중 “버스정류소” 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 사 천 시 공 보

제 625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제3조제2항 중 “금연구역” 을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금연구역” 을 각각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25호

사천시 훈령 제379호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7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25호

## 【개정안】

### [별표 1]

###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6조제5항 관련)

#### 1. 단순노무원.도로보수원.환경미화원의 정수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⑤	환 경 미화원 ⑥	
		소계	시 설 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①	현장지도 단속감시 상담인부 ②	자 격을 요하는 인 ③	단순잡역 조무인부 ④			
총 계	202	131	23	5	26	77	11	60	
본 청	소 계	87	76	2	5	13	56	11	
	행 정 과	11	11			4	7		
	주만활자원과	7	7			2	5		
	사회복지과	13	13	1		7	5		
	정보통신과	3	3				3		
	민원지적과	6	6				6		
	세무과	3	3				3		
	회 계 과	1	1				1		
	문화체육과	7	7				7		
	관광진흥과	1	1				1		
	환경위생과	1	1				1		
	교통행정과	6	6	1	4		1		
	녹지공원과	10	10				10		
	도 시 과	2	2		1		1		
	건 축 과	1	1				1		
	건설수도과	1	1				1		
	도 로 과	11						11	
	우주항공과	1	1				1		
지역경제과	2	2				2			
의 회	소 계	1	1				1		
	의회사무국	1	1				1		
직 속 기 관	소 계	30	30			13	17		
	보 건 소	13	13			13			
	농업기술센터	17	17				17		
사 업 소	소 계	83	23	21			2		60
	평생학습센터	2	2				2		
	환경사업소	60							60
	하수도사업소	21	21	21					
출 장 소	소 계	1	1				1		
	신수출장소	1	1				1		

# 사 천 시 공 보

제 625호

사천시 고시 제2019-180호

## 저수지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고시

사천시에서 시행 할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29.

##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저수지 개보수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정동면 풍정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노후 저수지 보수 보강을 통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농경지를 보호하여 영농 편의 제공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가. 사업의 내용 : 저수지정비 2개소(묵곡저수지, 풍정저수지)
  -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정동면 풍정리 일원
5. 사 업 비 : 금700,000천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6. 사업기간 : 2019. 7. ~ 2019. 12.(5개월)
7. 사업의 효과 : 저수지 용수확보 능력, 내구성 증대 및 재해예방
8.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사천시청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장소 : 사천시청 건설수도과(전화 055-831-3278)

# 사 천 시 공 보

제 625호

사천시 고시 제2019-181호

##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사천시에서 시행 하고 있는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29.

##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신촌리**, 곤양면 환덕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을 통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농경지를 보호하여 영농 편의 제공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가. 사업의 내용
    - 당 초 : 저수지정비 2개소(용치저수지, 환덕저수지)
    - **변 경** : 저수지정비 3개소(용치저수지, 환덕저수지, **관속골저수지**)
  - 나. 사업의 구역
    - 당 초 :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곤양면 환덕리 일원
    - **변 경** :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신촌리**, 곤양면 환덕리 일원

# 사 천 시 공 보

제 625호

## 5. 사업비

가. 당 초 : 금400,000천원

나. 변 경 : 금800,000천원

## 6. 사업기간

가. 당 초 : 2019. 2. ~ 2019. 8.(6개월)

나. 변 경 : 2019. 2. ~ 2019. 12.(10개월)

7. 사업의 효과 : 저수지 용수확보 능력, 내구성 증대 및 재해예방

8.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사천시청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10. 변경사유 : 균특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대상지 추가

11.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장소 : 사천시청 건설수도과(전화 055-831-3278)